

선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, 적법하게 버려주세요!



배출기준

- 영해기선(육지 또는 섬)으로부터 **3해리 이내 해역 배출금지**
- 3~12해리 이내 해역 **25mm 이하로 분쇄 후 배출**
- 12해리 이상 해역은 **일반배출 가능**

기록관리

- 총톤수 400톤이상, 최대승선인원 15명 이상인 선박은 **폐기물기록부를 비치·기록·보관하여야 함**

음식물 쓰레기 배출 방법	영해기선 3해리 이내	3해리 ~ 12해리	12해리 이상
미분쇄 시	배출불가	배출불가	배출가능
분쇄·연마 시	배출불가	배출가능 (25mm 이하 분쇄)	배출가능

※ 배출불가 시 음식물 쓰레기 봉투 사용 → 육상처리

폐기물(음식찌꺼기)을 해양에 불법 배출시,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. (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)

